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9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이상식·최민희·김우영

홍기원 • 이병진 • 손명수

민병덕 • 어기구 • 유준병

박수현 • 박홍배 • 임미애

조인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후에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현충원 안장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대하여도 재직 기간 및 퇴직 형태 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임.

이에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거나 경찰청장·소방 청장으로 재직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경찰·소방공무원으 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경찰청장·소 방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 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전단 중 "30년"을 "10년"으로, "사람(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의2 중 "제1항제4호라목"을 "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제4호라목"으로 한다.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중 "타목 및 파목"을 "타목, 파목 및 거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 1. ------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신 설> 거.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 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경 찰청장 • 소방청장으로 재 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 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 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국립호국원 4.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

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으로서 사망한 <u>사람(경찰</u>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 <u>직한 사람에 한정한다)</u>.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 은 「공무원연금법」 제25 조를 준용한다.

- 5.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 1. ~ 4. (생략)
- 4의2. <u>제1항제4호라목</u>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 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 5. (생략)
- ⑥ · ⑦ (생 략)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 기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u>사람</u>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u>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u>항 제4호라목</u>
5.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u>타목</u>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나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 2. ~ 6. (생략)
- ② ~ ⑥ (생 략)

1	- <u>타목,</u>
<u>파목 및 거목</u>	
2. ~ 6. (현행과 같음)	
⑦ ~ ⑥ (혀해과 같은)	